본 논문은 아래의 저작권 정책을 가지고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정보 (Copyright Policy)**

  -학술지 발행기관

- **재사용 정보 (CC License)**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 **셀프아카이빙 정보 (Author Self-Archiving)**

  -Gray : 검토 중 · 비공개 · 무응답 · 기타

- **원문 접근 정보 (Reader Rights)**

  -이용자 접근정책 : CCL 유형에 따른 재사용 가능

  -무료 DB : KCI

학술지 저작권 정보 관련 문의는 **국립중앙도서관 학술지 저작권 안내 시스템(KJCI)**으로 문의(042-861-1976)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025, Vol. 30, No. 3, 459-480

OPEN ACCESS

기술매개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심리학적 개관: 개념, 유형, 동향, 그리고 향후 과제

김 지 은†
연세대학교 심리과학이노베이션연구소

본 연구에서는 서술적 문헌고찰 방식을 통해 기술매개 젠더기반폭력(Technology-Facilitated Gender-Based Violence; TFGBV)의 개념적 기반을 정립하고, 그 하위 유형의 특성과 심리적 함의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TFGBV는 디지털 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발생하는 젠더기반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미지 기반 성폭력(IBSA), 독싱(doxxing), 사이버 스토킹, 기술매개 강압적 통제(TFCC), 섹스토션(sextortion)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TFGBV는 단일한 범주로 환원할 수 없는 다층적이고 상호교차적인 폭력의 스펙트럼이며, 용어 간 개념적 경계가 불분명하여 용어 사용의 혼선이나 정책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TFGBV는 단순한 '디지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성차별적 사회구조가 기술을 통해 재생산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구조적 젠더폭력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까지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IBSA에 편중되어 있으며, TFCC, 섹스토션, 독싱 등 다른 유형에 대한 심리학적 탐색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한계는 실천적 개입 및 정책적 대응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 향후 연구는 TFGBV 각 유형 간의 교차성과 경계를 정교하게 분석하고, 심리적 영향에 대한 실증적 검토를 통해 피해자 중심의 개입 모델을 구축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내 맥락에 적합한 용어 정립과 정책 체계 마련을 위한 학제 간 협력이 요구된다.

주요어 : 이미지 기반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 기술매개 젠더기반폭력, 딥페이크 성착취, 사이버스토킹, 서술적 문헌고찰

† 교신저자: 김지은, 연세대학교 심리과학이노베이션연구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50, 연세대학교 위당관 106호 (03722), E-mail: jeeeun.kim@yonsei.ac.kr

Copyright ⓒ 2025, The Korean Society for Woman Psychology.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s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 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급속한 기술의 발전과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의 확산으로, 우리는 이제 지구 반대편에서 발생한 사건조차 몇 분 이내에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 간 협력, 연대, 원조 등을 더욱 촉진하는 순기능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원치 않는 정보가 실시간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기능 또한 동반하고 있다. 역기능을 보여주는 사례가 다양하게 존재하나,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현상은 바로 젠더기반폭력(Gender-Based Violence, 이하 GBV)의 '온라인 진출'이다.

2024년 8월 국내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던 대규모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들은 GBV의 '온라인 진출'이 어느 정도로 우리 삶 가까이에 깊숙이, 또한 광범위하게 침투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다. 2024년 5월, MBC 뉴스데스크는 이른바 '서울대 N번방'이라는 이름으로 딥페이크 집단 성범죄 사건의 탐사 보도를 내보내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조국현, 남효정, 이준범, 2024년 5월 20일). 해당 사건은 그 전에 이미 독립 언론 셜록을 통해 2024년 1월부터 '범인은 서울대에 있다'라는 제목의 심층 취재로 보도된 적이 있었으나(박상규, 2024년 1월 29일),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활동가들 외에 일반인의 인식 범위 안에 들어올 만큼 크게 화제가 되지는 못했었다. 그러나 5월의 '서울대 N번방' 보도는 사건 명명의 부적절성에 대한 지적(유지영, 2024년 5월 22일)이 있었음에도 지속적으로 화제가 되며 사회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생기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후 3개월여 지난 시점에 MBC 뉴스데스크는 수도권의 다른 대학에서 발생한 대규모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보도하였고(이승지, 2024년 8월 19일), 피해자들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공유하던 텔레그램 대화방에 무려 1,200명이 넘는 참여자가 있던 것으로 알려지며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이후 X(구 트위터)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발생한 지역과 학교에 대한 제보를 받았고, 1분에 한 번꼴로 제보가 올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피해가 접수되며 이것이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 지역/학교 목록'으로 작성되어 전국 피해 지도까지 제작되기에 이르렀다(정한솔, 2024년 8월 27일). 이를 시작으로, 대학교를 넘어 중고등학교, 심지어 군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제작되어 공유되고 있다는 보도가 잇달아 나오며 디지털 성범죄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인식이 형성되었고(한예섭, 2024년 9월 23일), 이러한 문제의식의 공유를 통해 2024년 9월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었다(김세원, 2024년 9월 26일).

물론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2024년 초에는 미국의 유명한 팝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얼굴을 노골적인 자세를 취한 타인의 신체에 합성한 성적 이미지들이 SNS상에서 4,700만 회 이상 조회되며 미국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입법 논의를 끌어내었다(하승연, 2024년 1월 27일; 권영미 2024년 1월 28일). 영국 방송사 채널4 뉴스는 방문자가 많은 딥페이크 웹사이트 5곳을 분석한 결과 영국인 250명을 포함해 유명인 4천 명가량의 '딥페이크 음란물(deepfake porn)'을 찾아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김계환, 2024년 3월 22일). 특히 2016년에 조사했을 때

는 단 1개밖에 발견되지 않았던 '딥페이크 음란물'이, 2023년 1월~9월 사이에만 무려 14만 3천 733개가 발견되었다고(김계환, 2024년 3월 22일) 보도함으로써 이러한 범죄가 전세계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2024년 시큐리티 히어로는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최소한 인지된 성별이 여성)이라는 통계 결과를 발표해 이 범죄 유형이 GBV에 해당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딥페이크 음란물'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성적 욕망의 충족 문제가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 참여자의 위계와 영향력을 보여주는 '놀이'이자 일종의 거래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Henry et al., 2020; 홍남희, 2018; 박상규, 2024년 1월 29일; 조희연, 2024년 8월 31일; 한예섭, 2024년 9월 23일) 더욱 빠른 확산 구조를 갖는다. 이러한 맥락은 왜 이 범죄가 전 세계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폭발적으로 증가했는지를 설명해 준다.

용어의 진화

GBV라는 용어는 우리 사회에서 아직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처럼 익숙하게 다가오는 용어가 아닐 수 있다(김효정, 2024). 그러나 1979년 유엔 총회에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이하 여성차별철폐협약)」이 채택된 이후,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 이하 VAW)이라는 용어를 거쳐 현재의 GBV 용어에 이르기까지의 변천사는 가시화되지 않았던 폭력에 더 적합하고 적절한 이름을 붙이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GBV란 개인이나 집단의 실제 또는 인지된 성별, 젠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젠더'를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에 가해지는 모든 유형의 유해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VAW에서 GBV로 용어가 변화한 이유는 이분법적 성별 개념에 따라 피/가해의 맥락이 고착화되는 것을 피하고, 젠더화된 사회구조가 가져오는 사회적 기대와 권력 불균형이 폭력의 원인임을 더 명확히 드러내기 위함이었다(김효정, 2024). 이 개념은 신체적・성적・심리적(정서적)・경제적 피해를 포함한 폭력 전반을 아우르며, 성폭력・가정폭력・교제폭력 등 대중에게 익숙한 유형들 역시 모두 GBV의 범주에 속한다.

기술매개 젠더기반폭력(Technology-Facilitated Gender-Based Violence, 이하 TFGBV)이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젠더기반폭력, 즉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젠더에 기반한 폭력을 가하거나 촉진하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말한다(Henry & Powell, 2018; Henry et al, 2020; Dunn, 2020;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정책정보, 2024). TFGBV는 성희롱과 사이버/온라인 스토킹부터 성착취에 이르기까지 기술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종류의 폭력 행위를 포괄하는 용어(umbrella term)로, 본질적으로 이 개념은 기술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젠더 기반 괴롭힘, 학대, 착취를 포함한다. TFGBV는 SNS, 문자 메시지를 포함한 메신저, 이메일, 온라인 커뮤니티, 심지어 하드웨어(예: '몰래카메라' 또는 GPS 추적기 등)를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결정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폭력에는 지리적 경계가 없으며, 멀리서도 학대를 가할 수 있고 온라인 공격이 오프라인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성이 주된 표적이 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성소수자와 성 정체성・표현의 다양성을 지닌 사람들, 즉 지배적인 성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개인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Henry et al., 2020). 연구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은 이제 디지털 학대와 폭력이 젠더기반폭력의 연속선상에 있으며, 오프라인 괴롭힘과 교차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물리적 폭력으로까지 확대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Baekgaard, 2023).

TFGBV에 대한 학문적・정책적 이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확장되어 왔다. 2000년대 초반의 초기 연구들은 통합적 개념틀 없이, 사이버스토킹이나 '리벤지 포르노'와 같은 개별 현상에 대해 단편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많았다(Yar & Drew, 2019). 이후 2010년대 중반에 이르러 페미니스트 학자들과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여성과 소녀에 대한 온라인 폭력'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사이버 폭력', '기술 기반 성폭력', 'TFGBV' 등 다양한 용어들이 등장하게 되었다(UNFPA, 2024; UN Women, 2023).

예컨대, Henry와 Powell(2018)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가해자가 기존의 성적・심리적 학대를 새로운 방식으로 재현하고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미지 기반 성적 학대(또는 이미지 기반 성폭력; Image-Based Sexual Abuse, 이하 IBSA)의 개념화를 시도하였다. McGlynn과 Rackley(2017) 역시 '리벤지 포르노'라는 용어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사생활 침해로 축소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성폭력의 일환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IBSA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시간이 흐르며 학계에서는 TFGBV를 학대의 양상(예: 성적, 심리적, 경제적),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맥락(예: 친밀한 파트너 vs. 낯선 사람), 그리고 활용된 기술 플랫폼(예: SNS, 메신저, 해킹 도구 등)에 따라 유형화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어져 왔다(Henry, & Powell, 2016). 이처럼 개념과 용어의 진화는 '독싱'에서 '딥페이크 포르노'에 이르는 다양한 폭력 행위들이 궁극적으로 젠더화된 권력과 통제라는 구조적 패턴 속에서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흐름과 맞물려 있다.

오늘날에는 유엔여성기구(UN Women), 유엔인구기금(UNFPA) 등 주요 국제기구들 역시 TFGBV라는 용어를 공식 채택하고, 공통된 정의와 정책적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이 개념은 단순한 온라인상의 성적 학대를 넘어서, 성희롱, 협박, 사칭, 해킹, 감시 등 훨씬 광범위한 디지털 기반 폭력 전반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는 불과 10여 년 전과 비교해도 그 범위와 깊이가 상당히 확장된 것이다.

연구의 필요성

Qualye(2016)은 "온라인 성폭력 및 성착취의 유병률은 사용되는 정의와 그러한 행동을 인식하고 측정하는 우리의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고 언급한 바 있다. Bates(2023) 역시 "우리가 이 문제에 분명하게 이름을 붙이고 그것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바람에 여성과 소녀들에게 가해지는 만연한 폭력에 대처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면?"이라고 언급하며, 존재하지만 호명되지 않아 인식되기 어려운 형태의 폭력에 '이름을 붙이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관련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TFGBV의 양태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이러한 현상을 정확히 포착할 수 있는 개념과 용어를 적시에 정립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앞서 2024년도 대규모 딥페이크 성착취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미 발생하고 있는 범죄의 특성을 최대한 빠르게 포착하고 법제화하여 피해의 확산을 줄이려는 시도가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는 성과는 있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해당 행위를 어떻게 명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상당하였다. SNS 중 X(구 트위터)에서는 '딥페이크'라는 표현을 대체할 용어를 찾는 글이 올라오기도 하였다. X 사용자 '요리사안'은 현 법적 용어인 '성적 허위영상물'은 딥페이크 결과물 중 영상만을 지칭함으로써 사진이나 게임 등 다양한 형식의 범죄물을 지칭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대체용어로 제시된 '불법합성물'은 합성이 아닌 AI생성물을 지칭하지 못하고 성폭력이라는 특징을 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많은 SNS 사용자들이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학문적 연구를 통한 것이 아닌 그때그때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언론 보도를 기반으로 용어가 만들어진다는 한계가 뚜렷하였다.

이 외에도 특정 용어가 처음에는 널리 사용되었더라도 이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하거나 왜곡된 인식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 보다 적절한 표현으로 대체되는 사례도 다수 존재해 왔다. 국내에서도 '몰카', '도촬(도둑촬영)'에서 '불법촬영'으로, '음란물'에서 '성착취물'로, '지인능욕'에서 '딥페이크 포르노'를 거쳐 '허위합성물' 또는 '허위영상물'로 관련 용어가 보다 피해자 중심적이고 성인지적인 용어로 변화한 사례들이 있다. 이처럼 관련 개념을 지칭하는 용어들은 시대적 맥락과 사회 인식의 변화에 따라 계속해서 수정되거나 새롭게 제안되어 왔으며, 현재도 변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최소윤, 한민경, 2020). 따라서 본 연구는 서술적 문헌고찰을 통해 TFGBV에 대한 국내외 최근 용어 및 관련 논의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용어 사용의 혼선을 줄이고 심리학적 관점에서 어떠한 개입 모델이 요구되는지 탐색하며, 향후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술매개 젠더기반폭력(TFGBV)의 개념과 범위

TFGBV는 전통적인 GBV의 양상이 디지털 공간으로 반영되거나 확장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Paradiso, Rollè, & Trombetta, 2024). 스토킹, 성폭력, 교제폭력, 심리적 협박 등 기존의 오프라인 폭력은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환경에서 더욱 극적인 방식으로 수행되며, 그 파급력은 이전보다 훨씬 광범위해지고 있다. 가해자는 익명성, 정보 확산의 속도와 범위, 온라인 콘텐츠의 지속성과 삭제 불가능성과 같은 디지털 환경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피해를 극대화한다(Baekgaard, 2023; Paradiso, Rollè, & Trombetta, 2024).

TFGBV는 단지 '가상 공간'에서의 경험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트라우마와 공포를 유발하는 현실적 폭력으로 작용한다. 많은 피해자들은 온라인 폭력의 지속적이고 전방위적인 특성, 그리고 전 세계적인 노출 가능성으로 인한 수치심과 굴욕감으로 인해 온라인 폭력이 물리적 폭력 못지않은 심각한 심리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UNFPA, 2024; Paradiso, Rollè, & Trombetta, 2024; Henry et al., 2020). 실제로, 온라인 위협

은 오프라인상의 신체적 폭력이나 스토킹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가해자가 SNS, 위치 추적 앱, 스파이웨어 등을 통해 피해자의 일상을 감시하거나 통제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UN Women, 2023).

이러한 온라인-오프라인 간의 상호 연계성은 TFGBV가 단절된 별개의 폭력이 아니라 전통적인 GBV와 연속선상에 있는 구조적 현상임을 시사한다. TFGBV는 단순한 '디지털상의 문제'로 축소될 수 없는, 기술을 매개로 성차별적 사회구조가 재생산되고 강화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구조적 젠더폭력으로 인식되어야 한다(McGlynn et al., 2017; Henry et al., 2020; Henry et al., 2020). 이는 TFGBV가 젠더 권력의 불균형, 사회적 낙인, 피해자의 자율성 침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온라인·오프라인을 가로지르는 억압과 통제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Henry & Powell, 2018; Henry et al., 2020). 이에 따라 최근 학자들은 TFGBV를 '폭력의 연속체(continuum of violence)'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 기술이 기존의 성차별적 구조를 새로운 방식으로 재생산하고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McGlynn & Rackley, 2017; Henry et al., 2020).

TFGBV의 주요 유형과 특징

TFGBV에는 여러 하위 유형이 존재하며 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욱 그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유형 5가지, 즉 이미지 기반 성학대(성폭력), 독싱('신상털기'), 사이버 스토킹, 기술매개 강압적 통제, 섹스토션(성착취 협박)을 소개하고자 한다.

각 하위 유형별로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PsychInfo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동료 심사 연구(peer-review journal) 위주로 문헌 검색을 실시한 결과, 2025년 9월 현재 그림 2와 같이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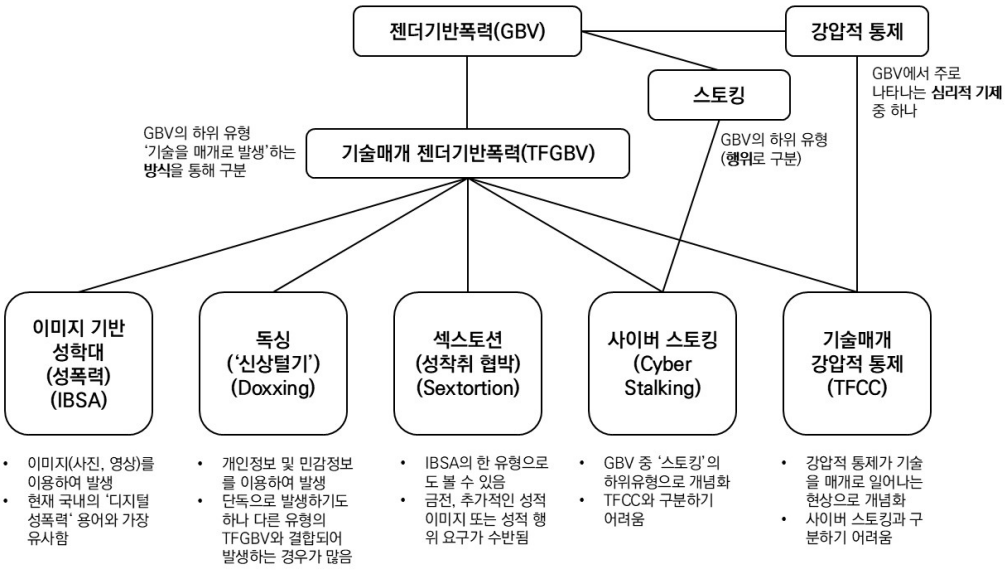

그림 1. TFGBV의 주요 유형과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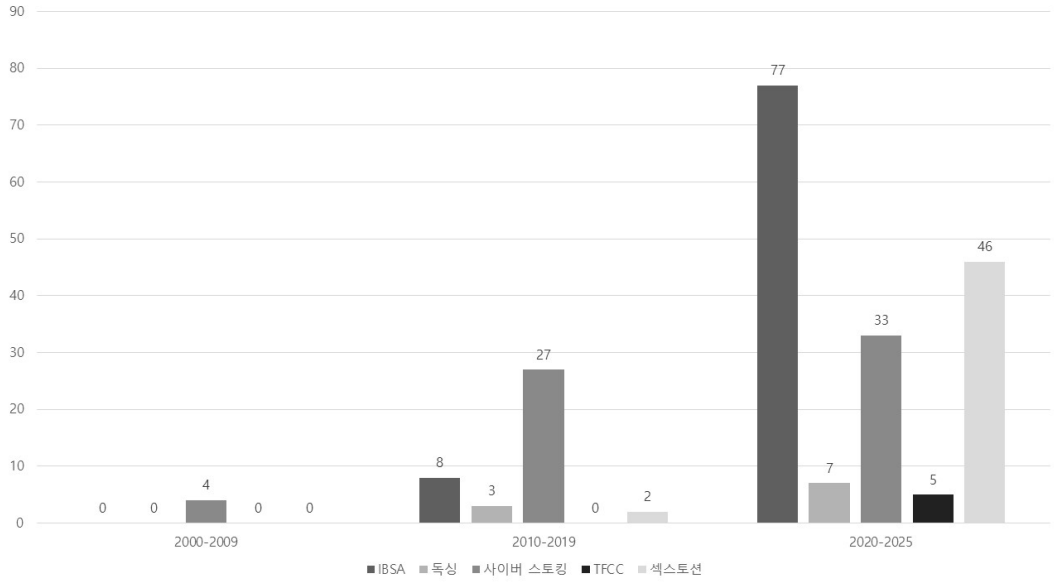

그림 2. TFGBV 하위 유형별 연구 동향

타났다. 대부분의 연구가 2010년대 이후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하위 유형별로 연구 편차가 상당하다는 것이 드러난다. 특히 IBSA 연구가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77편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에 비해 독싱과 기술매개 강압적 통제의 경우 10편 이하의 연구만 출판된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연구가 적게 이루어진 하위 유형의 TFGBV는 그 위험성이 실제 양상에 비해 과소대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미지 기반 성폭력(Image Based Sexual Abuse)

TFGBV의 여러 형태 중에서도 대중들에게 가장 많이 언급되고 주목받았으며 익숙한 형태는 단연코 디지털 성폭력일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정책정보란에서는 TFGBV을 곧 디지털 성폭력이라고 지칭하고 있으나(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4), 엄밀히는 디지털 성폭력은 TFGBV의 하위범주에 속하는 용어로 볼 수 있다.

최소윤과 한민경(2020)은 디지털 성폭력 관련 국내 연구 95편을 분석하여 디지털 성폭력/디지털 성범죄를 가리키는 용어의 변화 과정을 고찰하였다. 2017년 9월 정부는「디지털 성범죄(몰래카메라등)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디지털 성범죄 아웃(DSO, Digital Sexual Crime Out)'이라는 단체의 이름에서 처음 사용된 '디지털 성범죄'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차용하였다. 이때를 기점으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연구물의 수가 증가하였으며, 유관 정부 부처가 발주한 연구 용역 과제들 역시 해당 용어 사용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최소윤 & 한민경, 2020).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 또는 디지털 성범죄라는 용어는 대체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조항에 근거한 행위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비동의 촬영(“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동법 제14조 1항)”), 비동의 유포(불법촬영물 또는 그 촬영물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동법 제14조 2항)”), 유포 협박(“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동법 제14조의 3)”)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즉,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를 주로 디지털 성폭력으로 통칭하고 있다. 이는 IBSA의 정의 및 유형과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송원영, 2021).

디지털 성폭력에서 ‘이미지’는 상당히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McGlynn 외(2017)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구체적인 양상은 달라져도 디지털 성폭력에서 이미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이미지 기반 성폭력 연속체(the continuum of image-based sexual violence)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는 Kelly(1988)의 성폭력 연속체 개념에서 따온 것으로, McGlynn 외(2017)는 개별 사례 하나하나에 단편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례 간 연속성과 상호교차적 분석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하여 이러한 개념화 방식을 채택하였다고 설명하였다(McGlynn, Rackley, & Houghton, 2017; 홍남희, 2018). 이후 Henry와 Powell(2018)은 사적이거나 성적인 자료(예: 이미지, 동영상, 텍스트 등)를 당사자의 동의나 합의 없이 제작, 유포, 또는 유포하겠다는 위협을 모두 통틀어 IBSA라고 정의하였다.

처음 IBSA라는 용어가 제시되었을 때 이 용어에 포함되는 행위에 대한 3가지 기준이 있었다. 첫째는 성적/내밀한 이미지(intimate image)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the non-consensual *taking* of nude, sexual, intimate, or explicit images)하는 것, 둘째는 성적/내밀한 이미지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유포(non-consensual *sharing* of nude, sexual, intimate, or explicit images)하는 것, 셋째는 성적/내밀한 이미지를 유포하겠다고 협박(*threats to share* nude, sexual, intimate, or explicit images)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이미지란 사진과 영상을 포함하며, 언어적인 형태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Henry et al., 2020). 즉, 텍스트가 이미지와 함께 나타나면 IBSA에 해당할 수 있으나, 텍스트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 IBSA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동의 촬영, 비동의 유포, 유포 협박이라는 이 3가지 기준에 따르면 IBSA에 포함되는 행위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조항과 상당히 유사해 보인다.

그러나 인공지능을 이용한 여러 기술이 발전하면서, 촬영(taking image)뿐만 아니라 제작(making image) 역시 문제가 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이미지 제작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로 서론에서 언급한 대규모 딥페이크 성범죄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에 따라 나타나는 새로운 폭력과 범죄 양상을 포괄하기 위하여, IBSA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폭력 및 착취 행위들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현재까지 연구자들이 IBSA라는 포괄적인 용어(umbrella term)에 해당한다고 본 구체적인 폭력 행위들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포함된다(Paradiso et al, 2024).

- 성적 이미지의 비동의 촬영/제작: 기존의 '몰카', 즉 불법촬영이 여기에 포함된다. 딥페이크 성착취물(deepfake porn)의 제작 역시 넓은 범위에서 이 범주에 포함된다.
- 성적 이미지의 비동의 공유/유포: 기존의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graphy; RP)', '비동의 포르노(non-consensual pornography; NCP)', '비자발적 포르노(involuntary porn)', '비동의 성적 이미지(non-consensual intimate images; NCII)', 사이버 강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경우 유포되는 이미지는 1) 촬영/제작 당시 피해자가 촬영/제작에는 동의했더라도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2)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하거나(예: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촬영 등)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예: 강간 장면을 촬영 등) 상태에서 촬영/제작되었을 수도 있다. 즉, 촬영/제작 당시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비동의 유포 자체가 IBSA에 포함된다.
- 성적 이미지를 유포하겠다는 협박: 대표적으로 성착취 협박(sexual extortion: "sextortion")이 있다. 이는 성적 이미지나 영상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가적인 성적 이미지, 영상, 성적 행위, 또는 금전적 이익 등을 요구하는 범죄다. 성적 착취와 협박, 갈취가 결합된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온라인 환경에서 발생하며 피해자의 성적 이미지(사진, 영상 등)를 빌미로 추가적인 요구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피해자의 성적 이미지는 피해자에게서 제공받았을 수도 있고(예: "로맨스스캠", 온라인 그루밍 등), 해킹 등을 통해 얻었을 수도 있다.

연구자들은 나체 또는 성적 이미지의 비동의 촬영 및 공유가 '사회적 화폐(social currency)'의 한 형태이자, '인상 관리(impression management)'와 관련되고 동료(또래) 집단과의 사회적 지위를 구축하는 통로를 구성하는 정상화된 관행이 되었다고 지적한다(Henry et al, 2020). 홍남희(2018)는 여성의 몸이 "온라인상에서 돈이 되는 '산업'이자 남성의 시각적 쾌락을 위한 소비 대상으로 제작, 유통, 소비"되며 기존 사회의 여성혐오를 답습하고 더욱 공고하게 만들어왔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는 피해자 개인의 신체와 심리의 온전성과 주체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여성 전체를 성적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사회적 인식을 강화함으로써 GBV의 구조적 속성을 뚜렷하게 드러낸다.

종종 IBSA는 물리적으로 발생한 성폭력이 아니기 때문에 물리적인 성폭력보다 피해자에게 야기하는 심리적, 사회적 악영향이 적을 것이라는 인식을 접할 수 있다(김태경, 2021). 그러나 다수의 연구는 IBSA 피해자들이 불안,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Post-Traumatic Stress Symptom; PTSS), 자살 충동, 심한 수치심, 사회적 고립감 등을 경험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는 피해의 장기적·지속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IBSA는 피해 이미지가 온라인상에 영구적으로 남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피해자에게 '지워지지 않는 침해'로 인식된다. 많은 생존자들은 이미지나 영상이 공유되거나 소비될 때마다 트라우마가 재현되는 경험을 하며, 심각한 정서적 고통을 겪는다. IBSA는 단발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재유포 가능성과 사회적 재언급의 위협이 지속되는 장기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끊임없는 심리적 위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처럼 느낀다(Hellevik et al., 2025; Siegel et al., 2024; Bates, 2017; Huber, 2023).

또한 이미지에 개인 신상정보가 포함된 경우(IBSA와 독싱의 결합), 신변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 낙인,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안이 더욱 증폭된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대인관계나 사회생활, 경력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공간이나 공적 활동에서 물러나는 회피 전략을 취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부분은 이후 다른 개념들에서 더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IBSA는 이후 소개하는 다른 개념들에 비해 더 명시적으로 드러나고, 이 때문에 TFGBV를 논의할 때 IBSA는 언제나 중심적인 진입점이자 대표적인 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관련 법률이나 제도가 이후에 소개될 다른 유형의 TFGBV에 비해 비교적 잘 마련되어 있는 편에 속하기는 하나, 그럼에도 관련 법과 제도의 보호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는 피해자들이 적지 않다. 또한, 형법으로 IBSA가 처벌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유포된 이미지를 영구 삭제하거나 이미지의 재유포를 막는 데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가해자가 누군지 특정하는 것부터 장벽에 부딪히기도 한다. 작년의 대규모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들이 보여주듯이, 나날이 관련 기술이 발전하면서 IBSA도 새로운 양상으로 점점 진화하기 때문에 법률과 제도의 발전이 그 속도를 미처 따라잡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 때문에 관련 연구 결과가 체계적으로 누적되기보다는 그때그때의 사회적 상황이나 제도의 변화에 따라 연구가 시행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심층적인 구조보다도 표면적인 양상에 초점을 둔 다양한 용어들의 난립으로 이어져 이후 연구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최소윤, 한민경, 2020).

이 외에도, IBSA가 TFGBV 중에서도 성폭력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용어여서 TFGBV 관련 연구 기금이 성폭력에 편중되어 다른 유형(상대적으로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과 더 깊은 관련이 있는 기술매개 강압적 통제 등)의 TFGBV까지 통합적으로 연구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게 되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한민경, 2024).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여 최근에는 성폭력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폭력도 포괄하는 이미지 기반 폭력(Image-Based Abuse, 이하 IBA)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TFGBV에는 이미지를 매개로 한 유형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타인의 음성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발화하는 것처럼 합성하는‘섹터뷰’나, 다음 절에 소개할 독싱처럼 피해자의 개인정보, 계정 정보, 위치정보 등을 활용하는 방식도 포함되며, 이러한 유형들은 이미지 유포가 없는 상태에서도 심각한 위협과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독싱, 악의적 신상정보 유포, 또는 일명 '신상 털기'

‘독싱(Doxxing, 또는 Doxing)’은 우리나라의 ‘악의적 신상정보 유포’ 또는 ‘신상 털기’(이하 ‘신상 털기’)와 유사한 의미로 쓰이며, 아직 국내 관련 연구 분야에서 거의 소개되지 않은 용어다. 최초의 관련 연구 중 하나가 2011년(Phillips, 2011)에 출판되었을 만큼 전세계적으로도 연구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현상이기도 하다. 이 용어는 해커 문화에서 유

래한 신조어로, '문서(docs)를 공개한다'는 의미의 속어인 'dropping dox'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민감한 자료, 혹은 신원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를 일컫는다(Anderson & Wood, 2021). 일반적으로 독싱에 포함되는 정보는 피해자의 실명, 전화번호, 집 주소, 직장, 이메일 주소, 금융 정보, 내밀한 사진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괄하며, 괴롭힘이나 협박, 평판 훼손 등의 2차 피해를 유도하거나 정당화할 목적으로 공개하는 경우가 많다. Anderson과 Wood(2021)는 문헌 연구를 통해 독싱의 동기를 7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각각 협박/갈취(extortion), 침묵 강요(silencing), 보복(retribution), 통제(controlling), 평판 구축(reputation-building), 비의도적(unintentional), 공익(public interest)이다.

- 협박/갈취 독싱(extortion doxxing) 또는 '독스토션(doxtortion, dox와 갈취(extortion)의 합성어)'은 개인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거나 공개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대개) 금전적 이득을 갈취하려는 행위를 의미한다.
- 침묵 강요 독싱(silencing doxxing)은 독싱 또는 독싱의 위협을 활용하여 특정 인물의 영향력을 배제하거나 발언권을 박탈하려는 것이다.
- 보복 독싱(retribution doxxing)은 특정 개인을 '처벌'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된 독싱이다. 이는 젠더기반폭력 외에도 정치학 연구 등의 다른 분야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형태의 독싱인데, 보복 독싱이 종종 상반된 정치적 견해를 가진 개인을 겨냥한 표적 괴롭힘의 방식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괴롭힘의 의도가 아닌 보복 독싱의 형태도 있는데, 예를 들어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함으로써 정식 사법 시스템을 넘어서 '비공식적인 정의 실현'을 시도하는 형태가 나타나기도 한다(Salter, 2013; Wood, Rose, & Thompson, 2019 참조).
- 평판 구축 독싱(reputation-building doxxing)은 위의 유형들과는 달리, 독싱을 통해 특정 집단이나 하위문화 내에서 입지를 다지거나 명성을 얻기 위한 것이다.
- 비의도적 독싱(unintentional doxxing)은 악의적 의도 없이, 가해자의 부주의 또는 태만으로 인해 발생한다. 예를 들어, 기자가 정보원의 익명성이나 신원을 보호하지 못한 경우 이러한 비의도적 독싱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공익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지 못하고 수사기관에서 공개하는 경우 역시 이러한 형태에 해당한다.
- 공익을 위한 독싱(public interest doxxing)은 개인 식별 가능 정보 또는 독점 정보의 공개가 공공의 복지나 이익에 기여할 것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된다. 공익 독싱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정부나 기관, 공인들의 책임을 추궁하며 공익제보의 한 형태로 이루어지거나, 데이팅 앱 등에서 반복하여 사기를 치는 가해자에 대한 식별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공공 안전을 위한 경고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Douglas(2016)은 이러한 동기로 인해 발생하는 독싱은 어떤 면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논의하기

도 하였다.

이러한 동기들은 상호배타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여러 면에서 중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다(Anderson & Wood, 2021). 모든 성별이 독싱의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특히 여성이나 성소수자 등 젠더 관점에서 소수자인 집단이 독싱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자주 보고된다. 또한, 독싱은 단독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다른 형태의 온라인 폭력과 결합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환경을 성별화된 방식으로 복합적으로 얽어놓는다(Eckert & Metzger-Riftkin, 2020). 예를 들어 앞서 언급된 IBSA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는 사진이나 영상 등의 이미지가 유포될 때 이미지만 유포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지에 피해자의 연락처나 주소, 직장 등의 개인정보가 합성되어 함께 유포되는 경우도 상당하며, 이는 피해자가 온라인상의 위협뿐만 아니라 물리적 위협이 중첩된 공격까지 받을 확률을 높인다. 이처럼 독싱은 IBSA, 사이버스토킹, 성착취 등의 다른 TFGBV 양상과 긴밀히 교차하며, 디지털 공간을 매개로 한 성차별적 통제 전략의 일환으로 기능한다.

독싱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고 광범위하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피해자는 물리적 안전에 대한 극심한 불안을 경험하며, 욕설 메시지, 무단 전화, 원치 않는 방문 등 2차 피해에 시달릴 수 있다(Anderson & Wood, 2021; UN Women, 2023). 독싱은 때로 피해자나 그 가족에 대한 실제 스토킹이나 물리적 폭력으로까지 이어진다. 심리적 차원에서는 과도한 경계심, 신뢰 상실, 고립감, 불안증상이 나타나며, 피해자 다수는 전화번호 변경, 거주지 이전, SNS 중단 및 '잠적' 등과 같은 극단적 회피 행동을 보인다. 특히 여성 피해자의 경우, SNS 계정 폐쇄, 사회적 담론 참여 중단, 직장 사직 등 자기검열과 자기철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디지털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및 전문 영역에서의 참여 기회를 침해받게 된다(UN Women, 2023). 이는 독싱이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의 공적 삶을 침묵시키는 구조적 폭력의 기능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핵심 사례로 작용한다.

그러나 대중과 사법체계의 인식은 아직 독싱이 실제로 초래하는 위험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연구 역시 거의 없는 상황이며(그림 2 참조), 많은 자료가 실제 독싱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피해자들의 사례나 이들을 지원하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이다(UN Women, 2023). 물론 개별 사례들을 살펴보고 이에 즉각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실증적인 연구 결과가 충분히 누적되지 않으면, 이후 관련 제도 개선이나 피/가해자에 대한 심리적 개입 방안 구축 시 참고할 자료가 부족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후 다양한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스토킹(cyberstalking)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특정 인물에게 반복적이고 원치 않는 방식으로 접근, 감시, 위협함으로써 정서적 고통과 공포를 유발하는 침해 행위이다(Kaur et al., 2021; 김현승, 박지선, 2023). 이메일, 메시지, SNS, 추적 앱, 스파이웨어 등을 포함한 다양한 온라인 수단을 통해 지속적인 감시, 집착,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은 직접적인 위협 메시지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온라인 계정 해킹, 실시간 위치 추적, 가짜 계정 생성 등을 포함하며, 단순한 온라인 괴롭힘과는 반복성, 침습성, 정서적 위협의 강도로 구분될 수 있다.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시리즈 중《내가 비밀 하나 알려줄까?》(2024)와《의문의 발신자: 고등학교 캣피싱 사건》(2025)에서 이러한 사이버 스토킹의 예시를 생생하게 볼 수 있다. 《내가 비밀 하나 알려줄까?》에서는 가해자가 자신과 관련이 없는 SNS 인플루언서를 타겟으로 삼아 범행을 저지르는데, 피해자들에게 끊임없이 연락을 보내거나 피해자들의 동선을 추적하기도 하고, 피해자 본인이나 피해자의 가족 또는 지인을 사칭하여 타인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다.《의문의 발신자: 고등학교 캣피싱 사건》에서도 가해자는 피해자들의 동선과 인간관계를 이미 다 파악한 상태로 이에 맞춰 악의적인 연락을 지속하며,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알 수 없는 가해자에 의해 완전히 포위당해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무력감과 공포감, 좌절감에 시달린다. 참고로 캣피싱(Catfishing)은 온라인상에서 가짜 신분이나 허위 정보를 이용해 타인을 속이는 행위를 의미하며, 사진, 이름, 나이, 직업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SNS나 데이트 앱에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 활동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IBSA와 독싱, 때로는 다음 절에서 소개할 섹스토션(성착취 협박)까지 사이버 스토킹과 교차하는 양상을 잘 보여준다.

사이버 스토킹이라는 용어가 대중에게 친숙한 만큼 관련 연구가 많이 누적되지는 않았는데, 이는 사이버 스토킹이 기존에 오프라인에서 나타나던 스토킹의 양상과 한 스펙트럼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부터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으며, 관련 정의도 너무 다양했기 때문으로 보인다(Kaur et al., 2021).

사이버 스토킹은 단독 범죄로도 나타나지만, TFGBV의 다양한 형태와 복합적으로 얽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친밀한 관계가 종료된 이후, 가해자가 이별을 거부하거나 감시를 지속하는 맥락에서 사이버 스토킹이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다. 이러한 패턴은 다음 절에서 논의할 기술 매개 강압적 통제와 밀접하게 연관되며, 경우에 따라 독싱, IBSA 등의 다른 디지털 폭력과 교차하여 복합적인 피해 경험을 구성할 수 있다. 이는 사이버 스토킹이 단순히 디지털상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아니라 젠더화된 권력과 통제의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보여준다(UN Women, 2023; UNFPA, 2024).

심리적 영향은 오프라인 스토킹과 유사하거나 때로는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언제 어디서든 자신을 지켜볼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만성적인 공포, 불안, 불면, 집중력 저하, 우울, 분노, 수치심, 사회적 고립감 등의 증상을 경험하기도 한다(Worsley et al., 2017; Kaur et al., 2021; UN Women, 2023). 특히 기술의 침투성으로 인해 피해자는 자신의 거주지나 휴대폰조차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게 되며, 이는 사회적 고립이나 업무/학업의 중단, 일상생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법적 조치를 시도하더라도 가해자의 익명성이나 관할권 문제로 인해 무력감을 경험하는 경우도 많다(Worsley et al., 2017; Kaur et al., 2021). 피해자들은 SNS를 탈퇴한다든지 이메일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변경하는 등 자신의 삶의 반경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가해자에게 대응하기도 하고, 가해자에게 직접 경고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가해자의 심리에 대해 이해해

보려고 애쓰기도 한다(Worsley et al., 2017). 그러나 주변인이나 사회적 제도의 도움 없이 피해자 혼자 그 상황을 안전하게 벗어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스토킹 처벌법이 도입되며 이전보다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사이버 스토킹이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인식 전반의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술매개 강압적 통제

기술매개 강압적 통제(Technology-Facilitated Coercive Control, 이하 TFCC)는 사이버 스토킹과 유사한 양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학자들도 있다(한민경, 2024). (사이버) 스토킹이 반복적이고 원치 않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접근, 감시, 위협을 하는 행위에 초점을 둔 용어라면, TFCC는 강압적 통제(Coercive Control)가 기술을 매개로 일어나는 현상에 주목한 용어다. 강압적 통제는 Stark(2007)에 의해 처음 제시된 개념으로, 가해자가 여러 방식(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등)의 수단을 통해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조종하는 반복적, 구조적 과정을 뜻한다(Stark, 2007; MacDonald et al., 2023; 안재경, 2024). 즉 강압적 통제의 초점은, 어떠한 수단을 활용하든 간에 피해자의 자유와 힘, 자율성을 박탈하는 데 있다. 강압적 통제 개념은 주로 친밀한 배우자 학대(Intimate Partner Violence; 이하 IPV) 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더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어 연구되고 있는 추세다. 다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관련 연구가 부족한 양상을 보인다(안재경, 2024).

TFCC의 예시를 보면, GPS 정보를 이용하여 위치를 지속적으로 확인, SNS나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위협, 피해자의 이메일을 감시, 피해자의 허가 없이 피해자의 온라인 계정에 접속하는 등의 행위들이 있다(MacDonald et al., 2023; 한민경, 2024). 표면적으로 이러한 행위의 특성만 보면 사이버 스토킹과 구분하기 매우 어려워 보이며, 이것이 현재 TFCC의 고유한 특성을 정의하고 분석하는 데 연구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부분 중 하나다. TFCC 가해자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을 유도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가족이나 친구, 지인을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게 하거나 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기도 하고, 재정적인 독립을 할 토대를 쌓을 수 없도록 자유롭게 일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한다(Stark, 2007; MacDonald et al., 2023). TFCC는 오프라인에서의 폭력과 학대, 통제와 함께 발생하거나 그 전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MacDonald et al., 2023).

사이버 스토킹 피해와 유사하게, 피해자들은 만성적인 공포와 지속적인 불안, 우울, 수치심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자율성과 자기효능감이 줄어들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양상을 보인다(MacDonald et al., 2023). 그러나 TFCC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해자가 자신의 SNS 계정을 삭제하는 등으로 행동 제한을 하도록 권하면, 오히려 피해자의 사회적 관계망을 더 축소시키고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하는 양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MacDonald 외(2023)에서는 피해자가 기술 사용을 못 하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기술적 안전(계정 비밀번호 변경, 이중인증 설정, 스파이앱 제거 등)을 지원하되 사회적 관계망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권하

였다.

TFCC는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패턴으로 발생하며, 피해자의 일상 전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폭력이다. 그러나 TFCC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국내에서는 관련 용어조차 거의 소개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연구의 부재는 TFCC의 구조적 특성과 심리적 파급효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개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어렵게 만든다. 특히 TFCC는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통제와 위협을 경험하는 복합적 폭력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단발적 사건 중심의 외상 연구나 법적 대응 체계에서는 그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 근거기반 심리학적 개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TFCC의 개념 정립과 유형화, 장기적 심리적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성착취 협박, 섹스토션

섹스토션(sextortion)은 '섹스(sex)'와 '갈취(extortion)'의 합성어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성적인 이미지나 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금전, 추가적인 성적 이미지 또는 성적 행위를 요구하는 성착취의 한 형태로, 일반적으로 비동의 유포에 대한 위협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원하는 것에 대한 강요가 동시에 존재한다. 이는 이미지 기반 성학대(IBSA)의 유포 협박과 개념적으로 겹치며, 피해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강압적 요소가 더욱 강조된다.

섹스토션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한다. 일부는 친밀한 관계 내에서의 '보복'적 성격의 폭력으로 발생하기도 하고(예: 전연인 또는 전 배우자가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을 경우 성적인 이미지를 유포하겠다고 협박), 일부는 낯선 사람들을 대상으로 금전적으로 갈취 협박을 하는 형태로 발생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시로, 한국의 미성년 피해자들이 X에서 운영하던 '섹트' 계정에 협박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들의 핸드폰을 해킹한 후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보내게끔 했으며 이를 텔레그램 채팅방에 접속한 사람들에게 판매했던 N번방 사건을 들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미성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그루밍을 하거나, 가해자가 또래로 위장하여 친근하게 접근한 뒤 성적인 이미지를 요구하고, 이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추가적인 성적 이미지나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로맨스스캠'의 일종으로 주로 남성 피해자들이 많은, 동의하에 성적인 이미지를 촬영/제작했으나 이를 이용하여 돈을 보내도록 협박하는 '몸캠피싱' 역시 여기에 포함된다. 어떤 유형의 섹스토션이든, 모든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평판에 대한 두려움이 가해자가 활용하는 주요 통제 수단이다.

최근 10개국(호주,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멕시코, 네덜란드, 폴란드, 한국, 스페인, 미국)에서 실시된 대규모 다국적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14.5%가 일생에 한 번 이상 섹스토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Henry, & Umbach, 2024). 또다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경우 0.7~5.0%, 성인의 경우 4.0%~18.7%까지 섹스토션 피해를 보고하였다(Ray & Henry, 2025). 성별에 따라 피해 양상은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여성은 친밀한 관계나 지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협박 유형에 취약하며, 남성은 금전 목적의 무

차별적 사기형 범죄에 더 자주 노출된다(UN Women, 2023; Powell & Henry, 2018). 청년층, 여성, 성소수자의 경우 피해 비율이 더 컸으나, 남성, 청년층, 성소수자에게서 가해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준다(Ray & Henry, 2025; Henry, & Umbach, 2024).

섹스토션은 피해자의 내밀한 삶을 통제하고, 장기적으로는 극심한 두려움, 불안, 우울, 수치심, 사회적 고립, 학업·업무 기능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다(Henry, & Umbach, 2024; Ray & Henry, 2025). 특히 자신의 내밀한 이미지가 유포될지 모른다는 공포는 피해자를 장기간 심리적 고통 속에 묶어두며, 반복적인 협박은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피해자는 성적 트라우마뿐만 아니라 신뢰 손상, 대인기피, 자기비난 등으로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장기적 피해를 경험하게 된다(Ray & Henry, 2025). 그러나 피해의 심각성과 언론의 관심에 비해 관련 연구 수는 매우 적어 심리학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실증적인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Ray & Henry, 2025).

논 의

TFGBV는 전통적인 GBV의 양상이 디지털 기술과 결합되면서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복합적 현상이다. 본 논문은 서술적 문헌고찰을 통해 TFGBV의 개념적 틀을 정립하고, 그 하위 유형으로 IBSA, 독싱, 사이버 스토킹, TFCC, 섹스토션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TFGBV를 구성하는 폭력의 스펙트럼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핵심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TFGBV는 단일한 범주로 환원될 수 없는 다층적이고 교차적인 폭력 양상이며, 하위 유형 간의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기 어렵다. 특히 IBSA와 독싱, TFCC와 사이버 스토킹은 실제 범죄 양상에서 중첩되는 부분이 많아, 유형 간의 경계가 모호하고 용어 사용에 있어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혼선은 학술적 개념 정립의 어려움뿐 아니라 실무적 대응의 일관성 부족, 정책적 사각지대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TFGBV의 피해자들이 어떠한 심리적 어려움을 나타내는지 보면, PTSD 증상과 더불어 SNS를 삭제하거나 온라인상에서의 발언을 삼가는 등의 공통적인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하위 유형별로 구분하여 어떠한 증상이 어떠한 침해 때문에 발생했는지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언뜻 보기에 어떠한 피해가 발생해도 모두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둘째, 디지털 공간은 물리적 공간의 대체물이 아니라, 젠더화된 폭력이 새로운 방식으로 구현되고 증폭되는 플랫폼이다(Eckert & Metzger-Riftkin, 2020; Bates, 2023). 즉 여성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청소년, 이주민 등 취약성이 교차되면 될수록 더더욱 이러한 폭력 피해를 입기 더 쉬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Henry et al., 2020). TFGBV는 이러한 소수자의 목소리를 온라인상에서 없애버림으로써 피해를 더욱 가중시킨다(Henry et al., 2020; Worsley et al., 2017; Anderson & Wood, 2021).

셋째, 현재까지의 국내외 연구 지형은 그림 2를 통해 볼 수 있다시피 IBSA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으며, 섹스토션, 독싱, TFCC 등 다른 유형에 대한 심리학적 탐색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사회적

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사회운동과 정책 대응은 빠르게 이루어지는 반면, 학술적 접근은 현상에 대한 서술 수준에 머무르거나, 개념화 및 이론화 없이 단기적 보고서 형태로 소진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축적을 어렵게 만들며, 장기적인 개입 전략이나 이론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상황의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 하나는 법 제정과 제도 정비가 사회적 인식 변화보다 앞서는 현상 중심의 대응 구조이다.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노력 자체는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심리학적 기반 없이 조속히 마련된 법안은 실제 피해자 보호나 예방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다른 하나는 언론 담론 등에서 생성되는 용어들이 과도하게 정서적이거나 현상에 국한되어 사용되며, 이것이 심리학적 분석의 개입 여지를 좁히는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피해자의 경험을 정밀하게 조망하고 구조적으로 위치시켜야 할 개념들이 오히려 도덕적 가치 판단이나 급진적 담론에 흡수되어 연구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한편, 심리학계 내부의 대응 부족 또한 중요한 문제이다. TFGBV는 명백히 개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스트레스 요인이며, 만성적인 공포와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심리적 후속 반응을 유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심리학 분야에서는 해당 주제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가 매우 제한적이다. 이는 심리학자들이 관련 동향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거나, 디지털 기술과 젠더 문제를 '자신의 분야 밖의 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결국 TFGBV에 대한 심리학적 관심 부족은 피해자 중심 개입 모델의 구축 지연, 실무자의 전문성 결여, 정책 개발 시 심리학적 관점 부재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TFGBV 각 유형 간의 교차성과 경계를 보다 정교하게 분석하고, 각 하위 유형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탐색하는 연구를 통해 피해자 중심의 개입 모델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TFGBV의 핵심 심리 기제와 결과 경로를 통합 모형(개념도)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안전 계획 체크리스트나 상담 개입 로드맵, 또는 법적 지원 원스톱 경로도 등을 제작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디지털 기술과 성차별 구조의 상호작용을 분석할 수 있는 심리학 내 이론적 틀을 적극적으로 차용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 트라우마 기반 개입을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분석한 Pemberton과 Loeb(2020)은 기존의 GBV에 대한 전통적인 이론틀과 사례개념화에 다양성이 부족하며, 여성과 성소수자, 다른 사회적 소수자들의 경험이 잘못 해석되거나, 축소되거나, 심지어 피해자들이 비난받을 수 있는 여지도 만들었음을 지적한다. 트라우마 기반 심리학적 개입은 꼭 필요하지만, 이것이 개인적인 개입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성, 그리고 여성주의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Pemberton & Loeb, 2020).

현재 한국여성심리학회에서는 여성심리와 심리학 전반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여성 관련 분야, 특히 취약 여성, 소외 및 기타 지원이 필요한 영역에서 여성의 개인적 성장과 삶

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상담 및 심리학적 개입, 심리평가, 교육 및 생활지도 등)를 전문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심리사 자격증을 202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TFGBV 피해자 개입 모델은 심리학적 전문성과 여성주의적 시각을 통합하여 젠더 권력 구조와 사회적 맥락을 함께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성심리사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피해자 중심의 실천과 연구를 선도하는 주체로서의 기대가 크다. 예를 들어 TFGBV의 피해 사정(assessment), 디지털 안전 교육, 지역 네트워크(경찰·사법·삭제 지원기관 등)의 허브 기능을 여성심리사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내 맥락에 적합한 용어 정립 및 학문적 개념화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TFGBV는 디지털 기술과 젠더 권력 구조가 맞물려 나타나는 복합적 현상이기에, 단일 학문만으로는 그 특성과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거나 대응하기 어렵다. 따라서 법학, 기술학, 사회학, 여성학 등 인접 학문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개념적 정의와 연구 틀을 정교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학제 간 연계는 향후 실증연구의 질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와 예방을 위한 정책적·실천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권영미 (2024년 1월 28일). 테일러 스위프트까지 딥페이크 음란 이미지…백악관도 '화들짝'. 뉴스1.
https://www.news1.kr/world/usa-canada/5303987

김계환 (2024년 3월 22일). 영국 매체 "유명인 4천명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0322041700009

김세원 (2024년 9월 26일). '딥페이크 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알면서' 문구는 삭제. 여성신문.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2506

김애라 (2022). 기술매개 성폭력의 '실질적'피해와 그 의미. 한국여성학, 38(1), 1-36.

김태경 (2021). 카메라 등 이용촬영범죄와 접촉성 성폭력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심리적 충격 비교. 상담심리교육복지, 8(6), 23-40.
https://doi.org/10.20496/cpew.2021.8.6.23

김현승, 박지선 (2023). 사이버 스토킹 판단에 피해자와의 관계와 대인관계 유능성, 관계적 공격성이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여성, 28(2). 255-275.
https://doi.org/10.18205/kpa.2023.28.2.004

김효정 (2024). 젠더기반폭력으로서 친밀 관계 폭력의 개념에 대한 고찰과 향후 과제. 이화젠더법학, 16(1), 125-165.

박상규 (2024년 1월 29일). '범인은 서울대에 있다' 1화:"이번 시즌 먹잇감인가요?" 놈들이 텔레그램에서 웃었다. 셜록.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25004

송원영 (2021). 한국판 성적 이미지 기반 학대 통념 수용 척도(K-SIAMA)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6(3), 185-200.
https://doi.org/10.18205/kpa.2021.26.1.009

안재경 (2024). 강압적 통제의 정의와 적용범위에 대한 연구. 형사정책, 35(4), 167-210.

유지영 (2024년 5월 22일). "서울대판 N번방 사건? 언론이 이렇게 부르면 안된다".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32097

정한솔 (2024년 8월 27일).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 잇따르자 '피해학교 지도'까지 등장. MBC 뉴스데스크.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0834_36438.html

조국현, 남효정, 이준범 (2024년 5월 20일). [단독] '피해자 최소 12명' 서울대에서 집단 성범죄‥피의자 모두 '서울대'. MBC 뉴스데스크.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0035_36515.html

조희연 (2024년 8월 31일). "'지인능욕' 행태는 2016년부터 포착…여성을 동등하게 보지 않는 문화가 문제의 핵심".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830510723

최소윤, 한민경 (2020). '사이버 음란물'에서 '기술매개 젠더기반 폭력'까지: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국내 연구동향 분석. 한국범죄학, 14(2), 145-168.
https://doi.org/10.29095/JKCA.14.2.7

하승연 (2024년 1월 27일). 테일러 스위프트 딥페이크 확산 '논란'…"강한 규제 필요". MBN.
https://www.mbn.co.kr/news/world/4998381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4).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 Retrieved from 09.14.2024.
https://www.stop.or.kr/home/kor/M592478635/contents.do?

한민경 (2024). 기술 매개 강압적 통제로서의 스토킹. 2024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주최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자료집.

한예섭 (2024년 9월 23일). N번방・딥페이크 논란에도…2030 남성만 심각성 인식↓: 10명 중 9명 '성범죄 심각하다'…남・여 성범죄 인식 격차.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92317525793915

홍남희 (2018). 디지털 성폭력의 '불법화' 과정에 대한 연구. 미디어, 젠더 & 문화, 33(2), 203-246.
https://doi.org/10.38196/mgc.2018.06.33.2.203

2023 State Of Deepfakes: Realities, Threats, And Impact. (n.d.) *Security Hero.* Retrieved 09.14.2024. from https://www.securityhero.io/state-of-deepfakes/

Anderson, B., & Wood, M. A. (2021). Doxxing: A scoping review and typology. *The Emerald international handbook of technology-facilitated violence and abuse,* 205-226.

Baekgaard, K. (2023/2024). *Kristine Technology-Facilitated Gender-Based Violence: An Emerging Issue in Women, Peace and Security*. Georgetown Institute for Women, Peace and Security: Washington D.C.

Bansal, V., Rezwan, M., Iyer, M., Leasure, E., Roth, C., Pal, P., & Hinson, L. (2024). A scoping review of technology-facilitated gender-based violence in low-and middle-income countries across Asia. *Trauma, Violence,* & *Abuse, 25(1),* 463-475.

Bates, S. (2017). Revenge porn and mental health: A qualitative analysis of the mental health effects of revenge porn on female survivors. *Feminist Criminology, 12(1),* 22-42.
https://doi.org/10.1177/1557085116654565

Bates, L. (2023). 인셀 테러: 온라인 여성혐오는

어떻게 현실의 폭력이 되었나 (성원 역). 위즈덤하우스. (원본출판 2023년)

Douglas, D. M. (2016). Doxing: A conceptual analysis. *Eth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18(3),* 199-210.

Dragiewicz, M., Burgess, J., Matamoros-Fernández, A., Salter, M., Suzor, N. P., Woodlock, D., & Harris, B. (2018). Technology facilitated coercive control: Domestic violence and the competing roles of digital media platforms. *Feminist Media Studies, 18(4),* 609-625. https://doi.org/10.1080/14680777.2018.1447341

Dunn, S. (2020). Technology-facilitated gender-based violence: An overview. *Centre for International Governance Innovation: Supporting a Safer Internet Paper,* (1).

Eckert, S., & Metzger-Riftkin, J. (2020). Doxxing. *Th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gender, media, and communication,* 1-5. https://doi.org/10.1002/9781119429128.iegmc009

Hellevik, P., Haugen, L. E. A., & Överlien, C. (2025). Outcomes of image-based sexual abuse among young people: A systematic review. *Frontiers in Psychology, 16,* 1599087. https://doi.org/10.3389/fpsyg.2025.1599087

Henry, N. & Powell, A. (2016). Technology-Facilitated Sexual Violence: A Literature Review of Empirical Research. *Trauma, Violence & Abuse, 17(2),* 195-208.

Henry, N., & Powell, A. (2018). Technology-facilitated sexual violence: A literature review of empirical research. *Trauma, violence, & abuse, 19*(2), 195-208. https://doi.org/10.1177/1524838016650189

Henry, N., Flynn, A., & Powell, A. (2020). Technology-facilitated domestic and sexual violence: A review. *Violence against women, 26*(15-16), 1828-1854. https://doi.org/10.1177/1077801219875821

Henry, N., McGlynn, C., Flynn, A., Johnson, K., Powell, A., & Scott, A. J. (2020). I*mage-based sexual abuse: A study on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non-consensual nude or sexual imagery*. Routledge.

Henry, N., & Umbach, R. (2024). Sextortion: Prevalence and correlates in 10 countrie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158,* 108298. https://doi.org/10.1016/j.chb.2024.108298

Hinson, L., O'Brien-Milne, L., Mueller, J., Bansal, V., Wandera, N., & Bankar, S. (2018/2019). *Defining and measuring technology-facilitated gender-based violence.* International Center for Research on Women.

Huber, A. (2023). "A shadow of me old self": The impact of image based sexual abuse in a digital society. *International Review of Victimology, 29(2),* 199-216. https://doi.org/10.1177/02697580211063659

Kaur, P., Dhir, A., Tandon, A., Alzeiby, E. A., & Abohassan, A. A. (2021).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n cyberstalking. An analysis of past achievements and future promises.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163,* 120426. https://doi.org/10.1016/j.techfore.2020.120426

MacDonald, J., Truong, M., Willoughby, M., & March, E. (2023) *Technology-facilitated coercive control.* 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

McGlynn, C., & Rackley, E. (2017). Image-based sexual abuse.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37(3), 534-561.
https://doi.org/10.1093/ojls/gqw033

McGlynn, C., Rackley, E., & Houghton, R. (2017). Beyond 'revenge porn': The continuum of image-based sexual abuse. *Feminist legal studies, 25,* 25-46.
https://doi.org/10.1007/s10691-017-9343-2

Paradiso, M. N., Rollè, L., & Trombetta, T. (2024). Image-based sexual abuse associated factors: 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Family Violence, 39(5),* 931-954.
https://doi.org/10.1007/s10896-023-00557-z

Pemberton, J. V., & Loeb, T. B. (2020). Impact of sexual and interpersonal violence and trauma on women: Trauma-informed practice and feminist theory. *Journal of Feminist Family Therapy, 32(1-2),* 115-131.
https://doi.org/10.1080/08952833.2020.1793564

Phillips, W. (2011). LOLing at tragedy: Facebook trolls, memorial pages and resistance to grief online. First Monday.
https://doi.org/10.5210/fm.v16i12.3168

Quayle, E. (2016). *Researching Online Child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Are There Links Between Online and Offline Vulnerabilities?*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Ray, A., & Henry, N. (2025). Sextortion: A Scoping Review. *Trauma, Violence, & Abuse, 26(1),* 138-155.
https://doi.org/10.1177/15248380241277271

Siegel, J. A., Miller, A. M., Krieger, M. A., & Eaton, A. A. (2024). "Anything I could do to not have it paralyze me was welcome": Coping strategies employed by survivors of image-based sexual abuse. *Psychology of Violence. Advance online publication.*
https://dx.doi.org/10.1037/vio0000526

Stark, E. (2007). *Coercive Control: The Entrapment of Women in Personal Lif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UNFPA) (2024). *Technology-Facilitated Gender-Based Violence: A Growing Threat.*

UN Women (2023). *Technology Facilitated Gender-Based Violence: Developing a Shared Research Agenda.*

Worsley, J. D., Wheatcroft, J. M., Short, E., & Corcoran, R. (2017). Victims' voices: Understanding the emotional impact of cyberstalking and individuals' coping responses. *Sage open, 7(2),* 2158244017710292.
https://doi.org/10.1177/2158244017710292

Yar, M., & Drew, J. (2019). Image-based abuse, non-consensual pornography, revenge porn: A study of criminalization and crime prevention in Australia and England & Wales. *International Journal of Cyber Criminology, 13(2),* 578-594.
https://doi.org/10.5281/zenodo.3709306

1차원고접수 : 2025. 08. 01.
심사통과접수 : 2025. 09. 18.
최종원고접수 : 2025. 09. 30.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025, Vol. 30, No. 3, 459-480

A Psychological Overview of Technology-Facilitated Gender-Based Violence (TFGBV): Concepts, Typologies, Trends, and Future Directions

Jeeeun Kim

Yonsei University Psychological Science Innovation Institute

This study conducts a narrative literature review to establish a conceptual foundation for Technology-Facilitated Gender-Based Violence (TFGBV) an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and psychological implications of its various subtypes. TFGBV refers to gender-based violence perpetrated through digital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encompassing various forms such as Image-Based Sexual Abuse (IBSA), doxxing, cyberstalking, Technology-Facilitated Coercive Control (TFCC), and sextortion.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FGBV represents a multilayered and intersecting spectrum of violence that cannot be reduced to a single category. The conceptual boundaries between terms are often ambiguous, leading to confusion in terminology and gaps in policy implementation. Second, TFGBV should not be viewed merely as a "digital issue" but rather as a structural form of gender-based violence, in which sexist social systems are reproduced and reinforced through technology. Third, existing research has disproportionately focused on IBSA, while psychological investigations into other forms—such as TFCC, sextortion, and doxxing—remain in their early stages. This imbalance risks undermining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foundations necessary for effective intervention and policy development. Future research should work toward a more refined analysis of the boundaries and intersections among various forms of TFGBV, while expanding empirical inquiries into their psychological impacts to inform survivor-centered models of care.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 is also essential to establish contextually appropriate terminology and policy frameworks, particularly within the Korean sociocultural landscape.

Key words : Image Based Sexual Abuse, Digital Sexual Violence, Technology-Facilitated Gender-Based Violence, Deepfake porn, Cyberstalking, Narrative review